서울고용노동청 **보 도 자 료**

7월 1일, 우리는
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.

✍보도일시: 2018. 7. 6.(금) 석간
<인터넷 2018 7. 6.(금) 11:00 이후>
✍총 4쪽(붙임 포함)

❖ 서울고용노동청 현장홍보팀
과 장 김열기 (02-2250-5801)
주무관 전소영 (02-2250-5805)
허 균 (02-2250-5806)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/seoul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기초노동질서 현장안착을 위해
노동청과 산업계가 손 잡는다!

- 첫 번째로 '(사)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'와 업무협약 체결 -

노동청에 방문한 사업주 임00씨는 오랜기간 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필수적인 노동법을 알지 못해 노사 간에 문제가 발생하므로,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는 것보다 "예방적 관점에서 노동법 교육 및 정책홍보"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.

□ **서울고용노동청**(청장 나영돈)은 올해 청 중점추진 과제인 **"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"**을 산업계로 확산시키고자, 7.4(화) 14:00 장교빌딩에서 **(사)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**(회장 조수경)와 **"기초노동질서 현장안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"을 체결**했다.

* 서울지역 피부미용업 현황('16년, 통계청): 사업체 3,399개(전국대비 20.3%), 종사자(25.0%)

○ 이번 협약은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6.7%인 피부미용산업에 서면근로계약 체결, 임금체불 예방, 최저임금 준수 등 **기초노동질서를 성공적으로 정착**시켜 **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**하고,

- 일·학습병행제 등 **체계적 교육훈련**과 **기업지원**으로 **피부미용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**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.

○ 앞으로 서울고용노동청은 협회 회원사에게 **‘동영상 컨텐츠 제공’**(자율학습), **‘상시 아카데미 운영’**(매주 목요일), **‘고용·노동 전문강사 제공’** 등 다양한 방법으로 **‘필수노동법 교육을 지원’**하고,

- 사업주가 **‘자율점검 체크리스트’를 제출**할 경우, 이를 검토하여 **‘2018년 기초노동질서 점검’ 사업장 선정 시 적극 반영**할 계획이다.

□ 나영돈 청장은 “노동법 위반 신고의 70~80%는 **서면근로계약 미체결,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사업주들이 필수노동법을 알고 준수하면 법위반 및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**”라고 설명하면서,

○ “사업장 근로감독 등 사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, **지역 내 주요 사업주단체와 협업**하여 **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**하겠다”라고 하였다.

□ 조수경 회장도 “**피부미용업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법을 준수**할 수 있도록 **인식개선, 홍보활동**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

【붙임】 1. 필수노동법 동영상 및 상시 설명회 개요 1부.
2.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부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서울고용노동청 현장홍보팀 허균 주무관(☎02-2250-58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「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필수노동법」 동영상 및 설명회 개요

1 동영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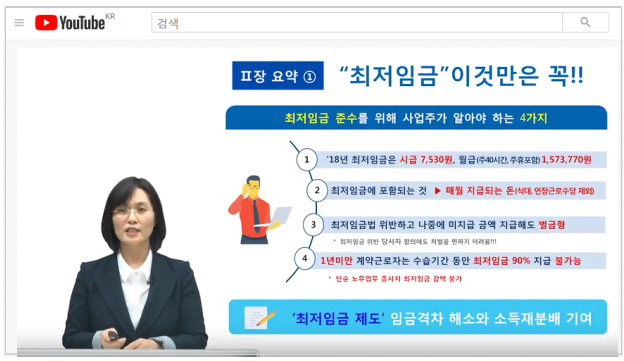
○ **유튜브**(www.youtube.com) 검색창에서 **"근로감독관 노동법"으로 검색**, 또는 **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**(www.moel.go.kr/seoul)의 **"팝업창" 클릭**

- **현직 근로감독관**이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**실제 노동청 신고사례를 바탕**으로 쉽게 설명(20분)









1 상시 설명회

○ **매주 목요일 14:00~15:30 서울고용노동청** * 에서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**현직 근로감독관의 필수노동법 강의, 질의응답 진행**

* 설명회 장소: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9층 아카데미홀

- **신청방법**: (전화) 02-2250-5885/5786, (이메일) lyyhy1248@korea.kr

붙임 2 기초노동질서 「자율점검 체크리스트」

○ **자율점검표에 체크**하여 서울지역 노동청·지청 **"권리구제팀"에 팩스 제출**

- 서식과 팩스번호는 **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** ☞ **부서별자료실 "2826"번 참고**

기초고용노동질서,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속입니다.			
구분	체크 항목	예	아니요
근로계약 (공통)	1. **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**하고 있나요?		
	2. 임금의 **구성항목**〔월(일, 시간)급, 상여금, 기타수당 등〕,계산방법,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나요?		
	3. **소정근로시간**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나요?		
	4. **휴일 및 연차유급휴가**를 서면으로 명시하였나요?		
	5. **취업장소** 와 **종사업무**를 서면으로 명시하였나요?		
	6. **근로계약서**를 근로자에게 **교부**하였나요?		
근로계약 (기간제·단시간)	7. **기간제** 근로자 또는 **단시간**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**근로계약기간**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나요?		
	8. **단시간**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**근로일** 및 **근로일별 근로시간**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나요?		
최저임금	9. **최저임금액**(2018년 7,530원)**이상**의 임금을 지급하였나요?		
금품지급	10. 근로자가 **퇴직하면 14일 이내에**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였나요?		
	11. 임금은 **매월 1회이상**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**직접** 그 전액을 지급하였나요?		
고용보험	12. **고용보험에 가입**하고 근로자 **입·퇴사시 신고**하였나요?		

년 월 일

위 확인자

사업장명 : 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소 재 지 :
전화번호 :